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 혜 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기획경제위원회,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
이 성 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
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관해 규정하고 있는 「장애
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과 개정사
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,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「서울특
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」를 보완
하기 위함입니다.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
4조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

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」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7. 2.>
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4조관련)

3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 가. 일반사항

편의시설의 종류	설치 기준
(14) <u>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,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</u>	(가)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(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)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,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. (나)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」는 장애인 등이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 등의 무대를 이용하는 것은 배제한 채 관람하는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

-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규정 신설(안 제5조제2항)하는 것입니다.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편의시설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편의시설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p>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기술 발달의 혜택을 누려할 대상은 누구보다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일 것입니다.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, 또한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
- 본 조례안은 기존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